

제328회 임시회
2014. 3. 20.(목)

심 사 보 고 서

- 충청북도 사회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

충 청 북 도 의 회
정 책 복 지 위 원 회

충청북도 사회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14. 3. 20.(목)
정책복지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발 의 자 : 최병윤 의원

나.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

- 발의일자 : 2014년 3월 3일
- 회부일자 : 2014년 3월 5일

다. 상정일자 : 2014년 3월 13일

- 제32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
-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 심사의결(원안의결)

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최병윤 의원)

가. 제안이유

- 사회복지위원회 산하 소위원회 구성·운영 조항을 신설하여, 「충청북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」 제9조에 따른 “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위원회”활동 등 다양한 사회복지 분야별 업무 처리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사회복지 분야별 10명 이내 소위원회 구성·운영 조항 신설(안 제7조의2)
- 소위원회의 전문가 또는 관계인의 출석 등 의견 청취 조항 신설(안 제8조)
- 그 밖에 “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”에 따른 문구 정비

3. 검토보고 요지

(정책복지 수석전문위원 최창국)

- 본 개정 조례안은 사회복지위원회가 다양한 사회복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전문성 및 효율성을 기하고자 소위원회를 구성·운영하는 조항을 신설하고, “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”에 따라 용어 및 문구를 정비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생략

6. 심사결과 : 원안의결

7. 소수의견요지 : 없음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- 충청북도 사회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

충청북도 사회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사회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4호 중 “ 부의하는”을 “회의에 부치는”으로 한다.

제3조제1항 중 “15인 이상 30인”을 “15명 이상 30명”으로 한다.

제4조제1항 중 “~하되 연임할 수 있다.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”
를 “~한다.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”로 한다.

제2항 중 “잔여기간”을 “남은 기간”으로 한다.

제5조의 제목 “(위원의 해촉)”을 “(위원의 위촉 해제)”로 하고, 같은 조 각
호 외의 부분 중 “해촉 할 수 있다”를 “위촉 해제할 수 있다”로 한다.

제6조제1항 중 “회무”를 “업무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.

제7조제5항 중 “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”를 “위원회의 회의는
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”로 한다.

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7조의2(소위원회) ① 위원회는 업무 처리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
기 위하여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·운영할 수 있다.

② 소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과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연
구, 조정, 심의, 의결하고 그 결과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③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선정하되 10명 이내로 구성한
다.

④ 소위원회의 위원은 그 기능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고,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소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⑤ 소위원회 회의는 소위원회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수시로 소집하여 개최한다.

⑥ 그 밖에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제8조제1항 중 “위원회는 심의·건의 및 의결사항과 관련하여”를 “위원회 및 소위원회는 심의·건의 및 의결사항에 관하여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위원회”를 “위원회 및 소위원회”로 한다.

제9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분야별 소위원회에 서기 각 1명을 둘 수 있다.

제10조 중 “위원회”를 각각 “위원회 및 소위원회”로, “위원에 대하여는”을 “위원에게는”으로 한다.

제11조 중 “필요한”을 ‘필요한 사항은’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기능) 1. ~ 3. (생략) 4. 그 밖에 충청북도지사(이하 "도지사"라 한다)가 <u>부의하는 사항</u></p>	<p>제2조(기능) 1. ~ 3. (현행과 같음) 4. ----- - <u>회의에 부치는</u> -----.</p>
<p>제3조(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<u>15인 이상 30인 이하</u>로 구성하며, 행정부지사, <u>보건복지국장은 당연직</u>위원이 된다.</p>	<p>제3조(구성) ① ----- ----- <u>15명 이상 30명</u> ----- -----.</p>
<p>제4조(위원의 임기) ① <u>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</u> <u>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.</u></p> <p>② <u>보궐위원의 임기는 그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</u></p>	<p>제4조(위원의 임기) ① ----- ---- <u>한다. 다만 공무원인</u> <u>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</u>----- -----.</p> <p>②----- - <u>남은 기간</u>-----.</p>
<p>제5조(<u>위원의 해촉</u>) 도지사는 위촉위원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<u>해촉할 수 있다.</u></p> <p>1. ~ 3. (생략)</p>	<p>제5조(<u>위원의 위촉 해제</u>) ----- ----- ----- ----- <u>위촉 해제할 수 있다.</u></p> <p>1. ~ 3.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6조(위원장의 직무) ① <u>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,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 한다.</u></p>	<p>제6조(위원장의 직무) ①----- ----- <u>업무를</u> ----- -----.</p>
<p>② (생략)</p>	<p>② (현행과 같음)</p>

현행	개정안
<p>③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.</p> <p>제7조(회의 및 의사)</p> <p>①~④ (생략)</p> <p>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</p> <p><신설></p>	<p><삭제></p> <p>제7조(회의 및 의사)</p> <p>①~④ (현행과 같음)</p> <p>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-----.</p> <p>제7조의2(소위원회) ① 위원회는 업무처리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·운영할 수 있다.</p> <p>② 소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과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연구, 조정, 심의, 의결하고 그 결과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</p> <p>③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선정하되 10명 이내로 구성한다.</p> <p>④ 소위원회의 위원은 그 기능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고,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소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</p> <p>⑤ 소위원회 회의는 소위원회 위</p>

현행	개정안
<p>제8조(의견의 청취 등) ① 위원회는 심의·건의 및 의결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출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</p> <p>②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,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·단체 등에 조사·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, 세미나 등의 개최를 통하여 관계기관·단체,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.</p>	<p><u>원장이 필요에 따라 수시로 소집하여 개최한다.</u></p> <p><u>⑥ 그 밖에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</u></p> <p>제8조(의견의 청취 등) ① 위원회 및 소위원회는 심의·건의 및 의결사항에 관하여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②위원회 및 소위원회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
<p>제9조(간사 및 서기) ①, ② (생략) <u><신설></u></p>	<p>제9조(간사 및 서기) ①, ② (현행과 같음) <u>③ 분야별 소위원회에 서기 각 1명을 둘 수 있다.</u></p>

현행	개정안
<p>제10조(수당 등) <u>위원회에</u> 출석하는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<u>위원에</u> 대 <u>하여는</u> 「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 비변상조례」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 급할 수 있다.</p>	<p>제10조(수당 등) <u>위원회 및 소위원 회에</u>-----<u>위원 에게는</u> ----- ----- -----.</p>
<p>제11조(운영세칙)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<u>필요한</u>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 한다.</p>	<p>제11조(운영세칙) ----- ----- <u>필요한 사 항은</u> -----.</p>

관계법령 발췌

□ 사회복지사업법

제7조(사회복지위원회) ①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 사항과 제15조의3제 2항에 따른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심의하거나 건의하기 위하여 특별시·광역시·도·특별자치도(이하 "시·도"라 한다)에 사회복지위원회를 둔다.

④ 사회복지위원회의 조직·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·도의 조례로 정한다.

[전문개정 2011.8.4.]

□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

제1조의3(사회복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) ① 법 제7조에 따른 사회복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<개정 2007.3.7, 2008.11.5, 2009.11.30>

② 사회복지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.

③ 사회복지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
□ 충청북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

제9조(처우개선 위원회 설치) ① 도지사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지위향상을 위하여 충청북도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 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 단, 위원회는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7조에 따른 충청북도 사회복지위원회로 대체할 수 있다.